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. 10. 27 선고 2019가단5622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

담당변호사 이재원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중

변 론 종 결 2020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0. 10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, ② 그런데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 등기명의자인 E가, 섬망증상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F로부터 2006. 10. 16.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. 12. 26. 접수 제40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모두 말소된 사실, ③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인 위 E 및 D의 이전등기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실, ④ 위와 같은 말소등기에 이어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G 앞으로 2006. 11. 5.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. 7. 26. 접수 제28754호로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위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의 지상에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제1, 2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, 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,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이 그 이후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거래

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본건을 두고 권리행사에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동철

별지